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3. 28 선고 2023가단6765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3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를 인도하고,

나. 21,000,000원을 지급하고,

다. 2023. 11. 21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,000,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판결)

판사 오성우

별지